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6.11.23(수) 10:00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일

3. 제안 이유

-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자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(안 제23조) 삭제
- 상위법령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상위법인 「소비자 기본법」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자 및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